

#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0 - 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8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제안이유

- 위원회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이를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,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금 여성기업 지원 시책 심의시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반영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.

## 주요내용

-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(안 제9조제4항)

## 개정조례안 : 불임1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2

##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3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##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8. 4. 3. ~ 2018. 4. 23. (2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불임4

- 방침결정문 : 불임5

< 블임 1 >

##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4항 중 “2년” 을 “3년” 으로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기업지원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기업지원과장 이 준 승
	담당팀장 직위·성명	기업지원팀장 이 재 만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 광희 (행정 2841)

< 볼입 2 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9조(구성 등) ①~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~⑥ (생략)</p>	<p>제9조(구성 등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----- -----3년----- ----- -----.</p> <p>⑤~⑥ (현행과 같음)</p>